

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41호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2-851호)’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 현행 조례는 의원의 의무(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 규정이 미흡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신설)
- 비위행위 유형 및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및 별표)

-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위반 뿐 아니라 품위 유지·청렴 의무·회피 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상응하는 구체적 징계기준 마련

○ 위반 시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결로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안 제4조 및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4. 9. 24. ~ 2024. 9. 30.(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을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이유 없이”을 “이유 없이”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의 제목 “(영리행위의제한)”을 “(영리행위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을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고흥군수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p> <p>1. ~ 1. (생략)</p>	<p>제2조(윤리강령)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 ----- ----- ----- -----.</p> <p>1. ~ 1. (현행과 같음)</p>
<p>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1. ~ 6. (생략)</p> <p>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p>	<p>제3조(윤리실천규범)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에 따라 ----- ----- -----.</p> <p>8. ----- -----.</p>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 해외 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검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 이유 없이-----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와 별표 1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⑥ (생략)

제6조(영리행위의제한) 의원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② ----- 법 제 43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

④ ----- 고흥군의회-----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

3조의2에 따라 고흥군수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 6. (생략)
7.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제8조(징계 등) -----

-----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에 -----

----- . -----

1. ~ 6. (현행과 같음)
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별표 1]

징계기준(제7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 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1]

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영리 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정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 외 활동제한, 알선, 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1]

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 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공개사과
	○ 업무추진비 등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중 해당부분 발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22-851호, 2022. 12. 19.]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51호

의 안 명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서울 강남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동구, 부산 진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서구, 울산 북구, 울산 동구, 울산 울주군, 강원 고성군, 강원 동해시,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평창군,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춘천시, 강원 화천군, 강원 강릉시, 경기 과천시, 경기 김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포천시, 경기 평택시, 경기 안산시, 경기 여주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경기 용인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화성시, 경남 의령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경남 고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주시, 경북 울릉군, 경북 청도군, 경북 안동시, 경북 울진군, 전남 고흥군, 전남 곡성군, 전남 나주시, 전남 담양군, 전남 순천시, 전남 신안군, 전남 완도군, 전남 장성군, 전남 진도군, 전남 무안군, 전남 화순군,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장수군, 전북 정읍시, 전북 전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충남 공주시, 충남 홍성군, 충북 단양군, 충북 괴산군, 충북 충주시, 충북 증평군, 충북 청주시)

의 결 일 2022. 12. 19.

주 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79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추진근거 및 평가체계	2
III. 일반현황	3
IV. 자치법규 평가결과	4
1. 평가결과 요약	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V.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4
1.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제한	14
2.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담수령 방지	27
3. 지방의회의원의 결직신고 의무 공개	40
4. 지방의회의원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통제	45
5.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 마련	53
6. 공무원 등의 채용 공정성 강화	65
7.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	74
8.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 구체화	84
9.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91
10. 금고지정 및 운영 투명화	103
11.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통제장치 강화	116
1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 예방	131
13. 기업인 지원 및 지원배제 사유 명확화	141
14.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 제고	146
15.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154
16.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 체계화	170
17. 일회성·선심성 축제·행사 지원 제한	181
18.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 강화	189
19. 도시숲 사업자 선정대상 확대	198
20. 급수설비 개량사업 지원 투명성 제고	204
21. 용역실명제 도입 등	213
22.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정비	221
VI. 조치사항	235
[별첨]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규제혁신 개선과제(안)	

□ 주요 개선권고

-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17개 과제)
 - (국외출장) 공무국외출장 허가 후 변경 시 심사 생략요건 개선 및 출장 시기, 경비의 적정성 등 실효성 담보 가능한 심사기준 마련
 - (국내여비) 근무지내(12km 미만) 출장비 지급 근거 삭제하고, 허위 출장 및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5배 가산징수)
 - (업무추진비) 접대비 사용 제한(4만원초과→3만원이하), 업추비 사적 용도 사용금지 등 집행 제한기준 마련 및 부당사용 환수·징계
 - (검직신고) 검직신고 내용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
 - (징계)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검직신고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외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 징계대상 비위행위 추가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형	문제점	개선방안
	<p>5.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 미비</p> <p>① 지방의회의원이 행동강령, 윤리실천 규범 위반 시 구체적인 징계기준 미비</p> <p>② 검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행위만 징계하는 것으로 징계기준 제한</p>	<p>5.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 마련</p> <p>① 의원행동강령 조례 등에 근거한 비위 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p> <p>② 검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외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 확대 및 징계기준 구체화</p>

[별표] 징계기준 개선안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 기준
1.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3. 겸직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4. 회피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p>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p>공개사과</p>
6. 그 밖의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